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5 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박균택・맹성규・김주영

박상혁 · 김승원 · 양부남

서영교 • 한민수 • 추미애

박지원 • 박정현 • 박해철

한준호 의원(13인)

주요내용 및 제안이유

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,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.

한편,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

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(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),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(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),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,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, 이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은 사형, 무기 또는 장기(長期)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"제23조 본문에"를 "제23조제1항, 제2항, 제4항에"

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제1심 공판의 특례) 제1심	제23조(제1심 공판의 특례) <u>①</u>
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	
송달불능보고서(送達不能報告	
書)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	
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(所在)	
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	
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	
할 수 있다. <u>다만, 사형, 무기</u>	<u><단서 삭제></u>
또는 장기(長期) 10년이 넘는	
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	
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
<u>하다.</u>	
<u><신 설></u>	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
	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
	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
	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
	야 한다.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
	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
	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
	<u>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</u>
	이 재판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

<신 설>

<신 설>

제23조의2(재심) ① 제23조 본문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수 없었던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날부터 14일 이내[재심청구인(再審請求人)이 책임을 질수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

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
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
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
수 있고, 이 경우 도달된 때에
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
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
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
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
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
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.
⑤ 제1항 및 제2항은 사형, 무
기 또는 장기(長期) 10년이 넘
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
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니하다.
]23조의2(재심) ① <u>제23조제1항,</u>
제2항, 제4항에

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	
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	
내]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	
구할 수 있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